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요건 중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관련 시설·기관에서 근무했던 건강가정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음.

이러한 정책환경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존 시행규칙 인용 규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요건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기간 요건의 개정

- 1)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개편되었으며, 가족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센터 외 타 시설·기관의 근무경력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요건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가족센터 근무자 경력 인정과 함께 가족센터 외의 시설·기관 근무자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근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 조항의 인용 조항 수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항은 법 제20조제6항이므로, 인용조항을 정확히 하도록 함.”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요건 중 “영양사”의 근거법령 인용 조문의 개정

“영양사의 면허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국민영양관리법」이므로, 인용법령을 정확히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6.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5항”을 각각 “법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2)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u>법 제20조제5항</u>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u>법 제20조제6항</u> ----- -----.
② <u>법 제20조제5항</u> 에 따라 한부 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 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 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 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 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 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 을 완화할 수 있다.	② <u>법 제20조제6항</u> ----- ----- ----- ----- ---. ----- ----- ----- ----- ----- -----.